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12. .

제 안 자 : 문화관광위원장

## 수정 제안이유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 태권도의 지속적 진흥·발전을 도모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우리나라의 세계적 문화브랜드 역할을 할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을 위하여 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태권도의 정의 규정과 기존 국민체육진흥법과 내용 중복 등의 우려가 있는 태권도지도자 관련 규정,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지정·지원 규정에 대해 일부 조항은 삭제 또는 수정하였으며,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 및 태권도인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태권도의 날” 조항을 신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민자유치, 토지수용에 대한 근거조항, 태권도단체간 역할 정립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해 국기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수정 주요내용

- 가.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무술 종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태권도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정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 나.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국가가 추진하도록 하고,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조항을 삭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함(안 제5조).
- 다. 태권도지도자는 체육지도자 중 태권도 종목의 지도자로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양성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라.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및 태권도인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태권도의 날 지정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신설).
- 마. 특정 단체 및 시설만을 지정하여 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차별화하는 것은 법 정신에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통합하여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을 둠(안 제8조).
- 바. 태권도공원의 조성 근거, 태권도공원의 주요 기능 및 조성지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지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명시함(안 제9조).

- 사. 태권도공원 조성지구 내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민간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10조).
- 아. 태권도공원 개발 및 민자유치 활성화, 토지매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민자유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내지 제14조 신설).
- 자. 인·허가 등의 의제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일부 규정은 신설함(안 제15조).
- 차. 기부금품의 모집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항을 삭제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 규정만 둠(안 제16조).
- 카. 조세특례, 부담금 감면 등은 해당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세감면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
- 타. 태권도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기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신설).
- 파. 태권도단체간 역할정립 등을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의 목적사업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태권도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회계감독 등은 정관에 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
- 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및 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부칙에 신설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성지 역할의”를 “성지인”으로, “국민들의”를 “국민의”로 한다.

안 제2조 중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안 제2조제1호(중전의 제2호) 중 “제7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국제기구 또는 법인으로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한다.

2. “태권도시설”이라 함은 태권도 수련·경기·연구·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안 제5조의 제목“(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진흥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삭제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안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태권도의 날) ①국민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9조를 삭제한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안 제9조(중전의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안 제10조(중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 시행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제15조 내지 제17조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민간사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행자
2. 사업의 시행기간
3.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6.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목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전라북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민간사업자는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채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전라북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민자유치 등) ①전라북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전라북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라북도지사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공원조성사업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안 제15조(중전의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원조성사업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의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안 제15조(중전의 제12조)제1항제2호·제17호·제18호·제20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제17호 내지 제19호로 한다.

안 제15조(중전의 제12조)제1항제2호(중전의 제3호) 중 “제36조·제45조”를 “제36조 및 제45조”로 한다.

안 제15조(중전의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7호(중전의 제4호 내지 제8호)·제12호(중전의 제13호) 및 제14호(중전의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3. 「농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 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
4.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5.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6제2항에 의한 도로의 연결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1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개발 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안 제15조(중전의 제12조)제1항제9호(중전의 제10호)·제10호(중전의 제11호) 및 제15호(중전의 제16호)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중전의 제14호) 중 “동 제14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변경 및 고시,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 종합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불요존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22.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안 제15조(중전의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6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을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17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물의 일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물의 일부를”로, “무상”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한다.

안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6조를 제18조로 한다.

안 제18조(중전의 제16조) 다음에 “제4장 태권도단체”를 삽입한다.

안 제19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8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국기원) ①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1.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2.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3. 태권도 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4.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5.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6.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

②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기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국기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국기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⑦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20조(종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태권도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

화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태권도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5. 공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6.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7. 그 밖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재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재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감사 1인 및 25인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를 두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⑥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23조를 제21조로 하고, 안 제24조를 삭제하며, 안 제25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제22조 내지 제24조로 한다.

안 제21조(중전의 제23조)제1항 중 “재단이나 공원”을 “공원이나 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재단은 제1항”을 “국기원과 재단은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 제21조(중전의 제23조) 다음의 “제4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한다.

안 제22조(중전의 제25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

안 제23조(중전의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이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안 제24조(중전의 제27조) 중 “제23조”를 “제21조”로, “제26조”를 “제23조”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3월”을 “6개월”로 한다.

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제4조로 하며,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태권도공원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태

권도공원조성 사업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국기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국기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안 부칙 제4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재단의 정관”을 “정관”으로, “허가”를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를 “인가”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설립등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산관계 및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를 “재산관계를 승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

명일부터 기산한다.



원 안	수 정 안
<p><u>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시설</u> <u>물을 말한다.</u></p> <p>4. “태권도단체”라 함은 태권도의 발 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 적으로 설립된 <u>국제기구 또는 법인</u> <u>으로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p> <p>5. “태권도공원”이라 함은 태권도와 <u>관련한 역사성 및 상징성이 있는</u> <u>지역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u> <u>된 것을 말한다.</u></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문 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u>기본계획</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li> <li>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 에 관한 사항</li> <li>3. 학교 태권도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 항</li> </ol>	<p><u>설물을 말한다.</u></p> <p>3. ----- ----- ----- <u>국제기구·법인</u> <u>또는 단체를 말한다.</u></p> <p>&lt;삭 제&gt;</p> <p>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 -----(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 -----.</p> <p>②<u>진흥기본계획</u>----- -----.</p>

원 안	수 정 안
<p>4. 태권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p> <p>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6. 태권도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p> <p>7. 태권도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u>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태권도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제6조(협조 등) <u>①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p> <p><u>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태권도 관련</u></p>	<p>&lt;삭 제&gt;</p> <p>제6조(협조) <u>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p>

원 안	수 정 안
<p><u>각종 대회 및 수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선수단 또는 수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u>제7조(태권도지도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태권도지도자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태권도 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u></p> <p><u>②문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지도자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u></p> <p><u>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 지도자의 등급·자격기준·검정·연수·자격증 부여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7조(태권도의 날) ①국민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u></p> <p><u>②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lt;삭 제&gt;</u></p>

원 안	수 정 안
<p>제8조(태권도시설의 지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태권도시설의 지정과 해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태권도단체의 지정·지원 등) ① 국가는 태권도의 진흥 발전·승급 심사 및 연수·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③태권도단체는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서 태권도 진흥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④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태권도단</p>	<p>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원 안	수 정 안
<p>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p> <p>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단체의 지원, 기금출연, 수익사업, 지원 및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국가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제고와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및 태권도의 연구·보급, 전시, 수련, 지도자양성 등을 위하여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 시행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및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p>	<p>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국가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p> <p>② (원안과 같음)</p> <p>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 시행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p>

원 안	수 정 안
<p><u>&lt;신 설 &gt;</u></p>	<p><u>얼은 민간사업자로 한다.</u></p> <p><u>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u></p> <p><u>②민간사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u></p> <p><u>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원 안	수 정 안
	<p>1. <u>사업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행자</u></p> <p>2. <u>사업의 시행기간</u></p> <p>3. <u>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u></p> <p>4. <u>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u></p> <p>5. <u>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u></p> <p>6. <u>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u></p> <p>7. <u>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목</u></p> <p>8. <u>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u></p> <p>④ <u>전라북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⑤ <u>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u></p>

원 안	수 정 안
<p>&lt;신 설 &gt;</p>	<p>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민간사업자는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채용조달계획을 포함한다)</li> <li>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li> <li>3.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li> <li>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li> </ol>

원 안	수 정 안
<p>&lt;신 설&gt;</p>	<p>필요한 경우에 한한다)</p> <p>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③전라북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문화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3조(민자유치 등) ①전라북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li> <li>2.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li> </ol> <p>②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③국가는 전라북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원 안	수 정 안
<p>&lt;신 설&gt;</p>	<p>④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라북도지사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p> <p>⑤제4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14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공원 조성사업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원 안	수 정 안
<p>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사업 시행자가 공원조성 사업을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제1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공원조성사업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의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p>

원 안	수 정 안
<p>1.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 허가</p> <p>2.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승인</p> <p>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p> <p>4. 「농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p>	<p>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p> <p>&lt;삭 제&gt;</p> <p>2. ----- ----- 제36조 및 제45조----- -----</p> <p>3. 「농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p>

원 안	수 정 안
<p><u>전용허가·협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 변경의 승인</u></p> <p>5.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u>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인가</u></p> <p>6.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u>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u></p> <p>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u>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u></p>	<p><u>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u></p> <p>4.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u>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u></p> <p>5.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u>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6제2항에 의한 도로의 연결 허가</u></p> <p>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u>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u></p>

원 안	수 정 안
<p><u>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u></p>	<p><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u></p>
<p>8.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u>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u></p>	<p>7.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u>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u></p>
<p>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u>분묘의 개장 허가</u></p>	<p>8. (원안 제9호와 같음)</p>
<p>10.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u>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u></p>	<p>9. ----- ----- <u>같은 법</u>----- ----- ----- <u>같은 법</u> ----- ----- <u>같은 법</u>----- -----</p>
<p>1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p>	<p>10. -----</p>

원 안	수 정 안
<p>다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p>	<p>----- -- <u>같은 법</u> ----- -----</p>
<p>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p>	<p>11. (원안 제12호와 같음)</p>
<p>13.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p>	<p>1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p>
<p>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p>	<p>13. ----- ----- <u>같은 법 제14조</u>----- -----</p>
<p>15.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개발 계획의 승인,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관광계획 개발의 승인,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p>	<p>14.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u>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개발 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계획의</u></p>

원 안	수 정 안
<p>16.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 협의</p> <p>1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p> <p>1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p> <p>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p> <p>2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p> <p>2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2.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p>	<p><u>승인</u></p> <p>15. -----  ----- <u>같은 법</u> -----  -- <u>같은 법</u> -----  ----- <u>같은 법</u> -----  -----  ----- <u>같은 법</u> -----  -----</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16. (원안 제19호와 같음)</p> <p>&lt;삭 제&gt;</p> <p>17. (원안 제21호와 같음)</p> <p>18. (원안 제22호와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p> <p>2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p> <p>2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u>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19. (원안 제23호와 같음)</p> <p><u>&lt;삭 제&gt;</u></p> <p>2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변경 및 고시,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p> <p>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 종합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불요존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같은 법 제21조 규</p>

원 안	수 정 안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13조(성금 및 기부금) 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금 및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정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 허가</p> <p>22.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6조(성금 및 기부금)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 ----- -----.</p> <p>&lt;삭 제&gt;</p>

원 안	수 정 안
<p>제1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물의 일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태권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17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p> <p>①----- ----- -----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물의 일부를 ----- ----- ----- 유상 또는 무상-----.</p>
<p>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p>	<p>&lt;삭 제&gt;</p>

원 안	수 정 안
<p>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조성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제16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생략)</p> <p>제17조(자금지원 등) ①국가는 제18조의</p>	<p>제18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원안과 같음)</p> <p>&lt;삭 제&gt;</p>

원 안	수 정 안
<p>규정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이 공원의 투자자에 임대할 용지매입 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공원 조성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공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태권도단체</u></p> <p>제19조(국기원) ①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li> <li>2.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li> <li>3. 태권도 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li> </ol>

원 안	수 정 안
	<p><u>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u></p> <p>4. <u>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u></p> <p>5. <u>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u></p> <p>6. <u>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u></p> <p>7. <u>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u></p> <p>8. <u>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u></p> <p>②<u>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u></p> <p>③<u>국기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u></p> <p>④<u>국기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u></p> <p>⑤<u>국기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u></p> <p>⑥<u>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u></p>

원 안	수 정 안
<p>제18조(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 ①태권도 진흥 및 공원의 조성·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li> <li>2. 태권도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li> <li>3. 태권도지도자 양성에 관한 지원사업</li> <li>4. 태권도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지원사업</li> <li>5. 태권도 보존, 보급, 홍보에 관한 사업</li> <li>6.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li> <li>7. 태권도인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li> <li>8. 공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li> <li>9.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li> </ol>	<p>되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p> <p>⑦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태권도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li> <li>2. 태권도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li> <li>3.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li> <li>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li> <li>5. 공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li> <li>6.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li> <li>7.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li> </ol>

원 안	수 정 안
<p>는 사업</p> <p><u>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u></p> <p><u>②재단은 법인으로 한다.</u></p> <p><u>③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u></p> <p><u>④재단은 태권도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u></p> <p><u>⑤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u>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u></p> <p><u>1. 이사장 1인</u></p> <p><u>2. 사무총장 1인</u></p>	<p><u>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u></p> <p><u>②재단은 법인으로 한다.</u></p> <p><u>③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u></p> <p><u>④재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u></p> <p><u>⑤재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감사 1인 및 25인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를 두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u></p> <p><u>⑥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u>&lt;삭 제&gt;</u></p>

원 안	수 정 안
<p>3. <u>이사 25인 이내(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u></p> <p>4. <u>감사 1인</u></p> <p>②<u>이사장, 사무총장,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u></p> <p>③<u>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u>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u></p> <p>1. <u>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p> <p>2. <u>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p> <p>3.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p> <p>4. <u>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u></p>	<p>&lt;삭 제&gt;</p>
<p><u>제21조(회계감독 등) ①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관광</u></p>	<p>&lt;삭 제&gt;</p>

원 안	수 정 안
<p>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재단은 공원의 관리 및 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기본재산의 과실금, 입장료 및 임대료 등 사업수입금, 국고 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p> <p>③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문화관광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사업 또는 재산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p> <p>제22조(매입의무 면제 등) 재단이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p> <p>제23조(휘장사업) ①재단이나 공원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p>	<p>&lt;삭 제&gt;</p> <p>제21조(휘장사업) ①공원이나 재단----- ----- -----</p>

원 안	수 정 안
<p>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u>&lt;신 설&gt;</u></p> <p>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 -----.</p> <p>②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국기원과 재단은 제1항과 제2항 -- ----- ----- -----.</p>
<p><u>제4장 보 칙</u></p>	<p><u>제5장 보 칙</u></p>
<p>제24조(자료제출) 문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단체 및 재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태권도단체 및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lt;삭 제&gt;</u></p>
<p>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 ----- ----- <u>특별시</u> <u>장·광역시장·도지사</u>----- -----.</p>

원 안	수 정 안
<p>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재단이 아닌 자는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p>	<p>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p> <p>②이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p>
<p>제27조(과태료)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3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제24조(과태료) ----- 제21조 --- 제23조-----</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lt;신 설&gt;</p>	<p>제1조(시행일) ----- 6개월 -----</p> <p>제2조(태권도공원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태권도공원조성 사업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p>
<p>&lt;신 설&gt;</p>	<p>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p>

원 안	수 정 안
<p>제2조(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경과조치)</p> <p>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p>	<p>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재단법인 국기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③재단법인 국기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p> <p>④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p> <p>⑤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p> <p>제4조(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경과조치)</p> <p>①-----</p>

원 안	수 정 안
<p>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이 법 시행 후 <u>1월</u> 이내에 이 법에 따른 <u>재단의 정관</u>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u>허가</u>를 받아야 한다.</p>	<p>----- ----- ----- <u>1개월</u> ----- ----- <u>정관</u> ----- ----- <u>인가</u> -----.</p>
<p>②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u>허가</u>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u>재단의 설립등기</u>를 하여야 한다.</p>	<p>② ----- ----- <u>인가</u> ----- ----- <u>설립등기</u> ----- -----.</p>
<p>③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규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p>	<p>③ (원안과 같음)</p>
<p>④ 이 법에 따른 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모든 권리·의무와 <u>재산관계</u> 및 <u>고용관계</u>를 <u>승계한다</u>.</p>	<p>④ ----- ----- ----- <u>재산관계를 승계한다</u>.</p>
<p>⑤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u>이사장을 포함한 임원</u>은 이 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p>	<p>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u>임직원</u>은 이 법에 따른 <u>태권도진흥재단의 임직원</u>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p>

원 안	수 정 안
<p>제3조(태권도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p> <p><u>이 법 시행 당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양성된 체육지도자 중 태권도와 관련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태권도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u></p>	<p><u>산한다.</u></p> <p><u>&lt;삭 제&gt;</u></p>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세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17
----------	------

발의연월일 : 2006. 2. 15.

발 의 자 : 정세균 · 강기정 · 강길부 · 강봉균  
 강창일 · 강혜숙 · 구논회 · 권선택  
 김교홍 · 김낙성 · 김덕규 · 김덕룡  
 김명자 · 김무성 · 김부겸 · 김선미  
 김성곤 · 김성조 · 김영선 · 김영주  
 김우남 · 김재윤 · 김재홍 · 김정훈  
 김종률 · 김종인 · 김진표 · 김춘진  
 김태년 · 김태홍 · 김형주 · 김홍일  
 김효석 · 김희선 · 나경원 · 노영민  
 노응래 · 노현송 · 류근찬 · 문병호  
 문석호 · 문학진 · 문희상 · 민병두  
 박기춘 · 박명광 · 박병석 · 박상돈  
 박영선 · 박찬석 · 배기선 · 배일도  
 백원우 · 변재일 · 서갑원 · 서재관  
 서혜석 · 선병렬 · 송영길 · 신국환  
 신기남 · 신중식 · 신학용 · 안민석  
 안병엽 · 안영근 · 양승조 · 양형일  
 염동연 · 오영식 · 오제세 · 이상호  
 우원식 · 우윤근 · 우제창 · 우제항  
 원혜영 · 유선호 · 유인태 · 유재건  
 유필우 · 윤원호 · 윤호중 · 이강두  
 이강래 · 이경숙 · 이계경 · 이계안  
 이계진 · 이광재 · 이광철 · 이근식

이낙연 · 이목희 · 이미경 · 이상경  
이상열 · 이시종 · 이영호 · 이용희  
이원영 · 이정일 · 이종걸 · 이해훈  
이화영 · 임종인 · 임채정 · 임태희  
장경수 · 장복심 · 장영달 · 전병헌  
전여옥 · 정갑윤 · 정성호 · 정청래  
조배숙 · 지병문 · 진수희 · 채수찬  
최 성 · 최규성 · 최규식 · 최연희  
최인기 · 최철국 · 한광원 · 한명숙  
한병도 · 홍미영 의원(130인)

## 제안이유

태권도는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를 담아 심신을 연마해 온 전통무예이자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을 주도해 온 호국의 무예로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180개국 7천여만 명의 태권도 수련인구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문화브랜드이자 전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

태권도의 이러한 발전은 태권도지도자와 국내·외 태권도사범 등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음. 그러나 현재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감소, 올림픽 종목의 지속적 유지 불투명 등 민간인에 의한 태권도의 발전 및 위상제고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태권도 진흥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특히,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에는 세계태권도의 총 본산 역할을 해야 할 태권도 경기장이나 종합수련 및 연구시설 등이 미비하여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와 수련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태권도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전 세계 7천만 태권도인들의 성지(태권도공원)를 조성하여 태권도인들의 자긍심과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물론 나아가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세계적 문화유산의 창조와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 태권도의 지속적 발전과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우리나라의 세계적 문화유산의 역할을 할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

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태권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태권도에 대한 국민 관심 제도 및 태권도인의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태권도의 날을 지정함(안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는 태권도의 위상제고 및 성지로서의 역할과 태권도 보급, 전시 수련, 지도자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태권도공원 개발 및 민자유치 활성화, 토지매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민자유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내지 제14조).

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의제 처리토록 함(안 제15조).

아. 태권도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기원을 설립함(안 제19조).

자. 태권도 진흥사업 및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함(안 제20조).

차. 태권도공원,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사업 및  
회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태권도지도자 및 태권도단체의 행정사항 등 대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  
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지도자”라 함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라 함은 태권도 수련·경기·연구·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단체”라 함은 태권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

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태권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태권도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태권도의 날) ①국민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 시행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민간사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행자
2. 사업의 시행기간
3.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6.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7.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목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전라북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민간사업자는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채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전라북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민자유치 등) ①전라북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전라북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라북도지사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공원조성사업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공원조성사업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의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본

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3. 「농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 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
4.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5.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6제2항에 의한 도로의 연결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

- 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1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개발 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

- 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5.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 협의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17.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변경 및 고시,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 종합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불요존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22.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

## 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성금 및 기부금)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물의 일부를 태권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 교량,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교통시설, 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태권도단체

제19조 (국기원) ①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1.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2.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3. 태권도 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4.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5.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6.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기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국기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국기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⑦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태권도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5. 공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6.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7.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재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재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감사 1인 및 25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⑥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회장사업) ①공원이나 재단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국기원과 재단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계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이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과태료)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1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국기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국기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규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따른 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